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한중콘크리트 품질관리 철저 협조 요청

1.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국토교통부 기술혁신과-1285(’25.3.14.)호 관련입니다.

2.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40 한중콘크리트)」 개정(’24.12.30)에 따라 **한중콘크리트 시공 시 예상평균기온에 따른 기온보정값을 적용**하고, 적정한 초기 및 계속보온양생을 통해 콘크리트의 품질기준강도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일부 건설현장에서 한중콘크리트 관련 개정 기준에 따른 품질관리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 관련 기준의 현장 정착을 위해 다음 사항을 협조 요청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계도기간: ’25.1.1~3.31)

   가. (**기준 전파**) 관할 건설현장 및 소관 발주공사에 한중콘크리트 기온보정강도 적용 기준 및 품질관리 사항 전파

   나. (**예상평균기온 산정**) 기상청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초기보온양생 기간 중 구조체 콘크리트 표면 위치의 예상양생온도와 이후 목표 재령까지의 예상외기온도를 고려하여 예상평균기온 산정

   다. (**기온보정값 적용**) 재령 28일 **예상평균기온이 0℃ 이상 4℃ 미만**인 경우 **기온보정값 6MPa**를 적용하고, **0℃ 이하인 경우**에도 **기온보정값 6MPa**를 **적용**하는 등 예상평균기온에 따른 적정 기온보정값 반영

   라. (**보온양생 계획 수립**) 재령 28일 이내에 품질기준강도가 발휘될 수 있도록 초기 및 계속 보온양생 계획을 수립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

4. 동절기 한중콘크리트의 품질 확보를 위해 소관 건설현장(발주 및 인허가 포함)에서 관련 기준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수도권(서울 · 경기 · 인천) 건설현장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에 따라 ‘26년 동절기 현장점검(’26.11.9~)부터 위 사항을 집중 점검 할 계획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개정전문(KCS 14 20 40 한중콘크리트) 1부.
3. 콘크리트 기준 개정사항 관련 주요QA(한중콘크리트) 1부. 끝.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수신자 도로계획과장, 도로공사과장, 민자도로관리과장, 교통안전팀장,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인천광역시장, 한국도로공사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한국공항공사사장, 국가철도공단이사장, 한국철도공사사장, 국토안전관리원장, 한국수자원공사사장,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

주무관	김아름	사무관대우	김경현	건설안전과장	전결 2026. 11. 12. 김호열

협조자

시행 건설안전과-3546 (2026. 11. 12.) 접수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중앙동) / http://www.molit.go.kr/srocm

전화번호 02-2110-6889 팩스번호 02-2110-6889 / beutkid@molit.go.kr / 비공개(5)